#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7호, 2004. 6. 18)

총 무 위 원 회 2004. 7. 30

### 1. 심사 경과

가. 2004. 6. 18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6. 19 :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4. 6. 28 :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보류

라. 2004. 7. 29 :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총무과장 김영고)

#### 가. 개정 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제3조의2)
  - 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 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라).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2)
- 3).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 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제16조의2 및 제18조)
- 4).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2004. 6.28)

-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 토요일 휴 무제, 연가일수 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실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총수 축소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한 사항이며, 입법예고(2004. 5. 26 ~ 6. 16) 결과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제3조의2비밀엄수 조항은 공직자가 퇴직후에도 적용되며 내부고발자를 처벌하게 하여 공직사회 개혁을 후퇴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이유로 신설을 반대 하고 제13조1항(근무시간)과 제18조제1항의(연가일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류를 요청하며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및 별표3의 출산일 휴가일수 개정조항은 찬성하는 의견이 접수 되었음
-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운용되지만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무 규정 으로서 제 규정의 동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임

-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실태가 다르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가공무원의 복무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행자부 표준조 례안의 내용대로 2004. 6. 24.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공포되어 시행하 고 있음

#### (2004. 7.29)

- 2004. 7. 28일 현재 경남도 및 도내 전시·군의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개정한 시·군이 경남도와 15개시·군이며, 미 개 정한시·군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5개시·군임.
- 조례 개정한 시·군중 행자부 표준안이 통과된 시·군은 경남도, 의령· 고성·합천군 등 1개도·3개군이며,
- 수정안이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등 12개 시·군임
  - 12개시·군 중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하는 원안이 통과된 시·군 이 마산시 등 3개시·군이며 수정안(17시)이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 등 8개시·군이고
  - 공무원비밀엄수조항(신설)이 원안 통과된 시·군이 진해시등 3개시·군이며 수정안 또는 삭제하여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등 9개 시·군임.
  - 그리고 연가일수를 정하는 조항(1~2일축소)이 원안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 등 2개시·군이며 수정안이 통과된 시군은 마산시등 10개시·군이고.
  - 배우자출산휴가 일수(3일)를 정하는 조항이 원안 통과된 시군은 창 원시등 11개시·군이며 수정안통과 시·군은 함안군뿐임.
  - 그리고 토요일 휴무제 시행 조항은 전 시·군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
- 조례개정안의 내용중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은 지방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와 사천시공무원복무조례제2조(복무선서)에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중부과 논란이 있고, 제13조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규정에 있어서 동절기의 근무시간을 18시로 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는 충족되나 일몰 후 방문민원은 적을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야간에 사무실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우려가 있으며 근무시간을 17시까지로 할 경우에는 주35시간~37시간 근무하게 됨으로서 주40시간 근

무미달이 됨.

○ 도내 시·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현황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김석관	∘신설조항인 제3조의2(비밀엄	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위 원	수)는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	김 영 고	비밀엄수 규정이 구체화되				
	조례 제2조(복무선서)에 비		어 있으며 이와같이 지방				
	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		공무원에 대하여도 행자부				
	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 규		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시달되었기 본조항을 준용				
	아닌가?		한것임				
성재윤	∘동절기에 오후6시까지 근무	총무과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위 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김 영 고	그동안에 문제되는 부분을				
	생각함.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건의해서 조치를 받을 계				
	행자부표준안대로 오후6시까		획입니다.				
	지 근무하고 우리시는 오후5						
	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정						
	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통일된						
	지침이 시달 될 것인지?						

## 5. 심사 결과 : 수정 가결(수정안 별첨)

### 6. 소수 의견:

- 소수의견 위원 : 성 재 윤 위원
- 내용: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기준이 되는 조례로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임. 국가공무원의 복무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행자부 표준안의 내용대로 2004. 6. 24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공포되어 7. 1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복무규정이 다르면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우리시는 본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가결하고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내 시·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현황

	집행부요구 원안가결	수 정 가 결							
구 분		비밀엄수	동 절 기 근무시간	연가일수	배 우 자 출산휴가	토요일 휴 무	비고		
경남도	0								
창 원		3, 4호 삭제	직협안(17:00)	원안 (1~2일축소)	원안(3일)	원안 (2~4회)			
마 산		"	원 안(18:00)	직협안(현행)	"	"			
진 주							미개정		
진 해		원 안	직협안(17:00)	직협안(현행)	"	"			
통 영		직협안(삭제)	"	직협안(현행)	"	"			
사 천							미개정		
김 해		직협안(삭제)	직협안(17:00)	직협안(현행)	"	"			
밀 양							미개정		
거 제		원 안	원 안(18:00)	직협안(현행)	"	"			
양 산							미개정		
의 령	0								
함 안		3, 4호삭제	직협안(17:00)	직협안(현행)	1일(협의)	"			
창 녕		직협안(삭제)	원 안(18:00)	직협안(현행)	원안(3일)	"			
고 성	0								
남 해		직협안(삭제)	직협안(17:00)	직협안(현행)	"	n,			
하 동		원 안	직협안(17:00)	원안 (1~2일축소)	"	"			
산 청							미개정		
함 양		직협안(삭제)	직협안(17:00)	직협안(현행)	"	"			
거 창		"	"	"	"	"			
합 천	0								

# 도내 시·군 공무원 복무조례(안) 개정현황 검토

구분	개 정 요 지	도·시·군 가결	가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행	。 공무원 비밀엄 수	경남도, 진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 합천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엄수의의무)와 °사천시공무원복무조례제2조(복무선서) 에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 중부과 논란
자 부	∘ 토요휴무 (단, 04. 7. 1 ~ 05. 6. 30까지는 월2회)	전 시·군	
끂	<ul><li>연가일수 축소</li><li>(1~2일)</li></ul>	경남도, 창원, 의령, 고성, 하동, 합천,	
준 안	。 동절기(11∼2월) 근무시간 : 18시까지	경남도, 마산, 거제, 의령, 창녕, 고성, 합천	°주40시간 근무는 충족되나 동절기 일 몰 후 방문민원감소 °야간에 사무실점등으로 에너지 낭비 우 려
	<ul><li>배우자 출산휴</li><li>가</li><li>(3일)</li></ul>	전 시·군, (함안 1일),	
직	<ul><li>공무원 비밀엄</li><li>수</li><li>조항 삭제</li></ul>	창원, 마산, 함안(3,4호삭제), 통영, 김해, 창녕, 남해, 함양, 거창	
협 수	• 연가일수 축소 반대(현행유지)	마산, 진해, 통영, 김해, 거제, 창녕, 남해, 함양, 함안, 거창	
정 안	∘ 동절기(11~2월) 근무시간: 17시까지	창원, 진해, 통영, 김해, 함안, 남해, 하동, 함양, 거창,	°동절기에는 주40시간 근무미달 04. 11. 1 ~ 05, 2. 28 : 주37시간 근무 05. 11. 1이후 동절기 : 주35시간 근무 °국가공무원(경남도)과 근무시간상이 : 18시 까지

##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04. 7. 29 제 안 자 : 김석관 의원 외 5인

###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 중 비밀엄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사천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동절기 일몰 후에는 방문민원 수가 적으며, 동절기에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실효성이 적으며, 반면 연가일수는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1일 축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비밀엄수 조항 삭제(제3조의2)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종전대로 함
  - 3. 1 ~ 10. 31 : 9시 ~ 18시
  - 11. 1 ~ 다음연도 2월말 : 9시 ~ 17시
- 연가일수 조정
  - 3월이상 ~ 5년 미만 : 종전대로
  - 5년이상 : 1일 축소
- 3. 수정안 : 별첨

## 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 시간을 두지 않는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1
6년이상~	22

#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삭제)				
	1 2 3 4					
제13조(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 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 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 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전일근무제) ① 	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하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제18조(연가일수) ①			제18조(연가일수) 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												
음과 같다.						(수정안)						
	재직기경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ارماما کا در فات	al ml.	4					2				4
	3월이상 6월대	기반	$\frac{4}{}$					3			_	$\underline{4}$
	6월이상 1년대	미만	<u>7</u>	-				<u>6</u>			-	<u>7</u>
	1년이상 2년대	미만	<u>10</u>	-				9			_	<u>10</u>
	2년이상 3년대	미만	<u>13</u>	-				<u>12</u>			_	<u>13</u>
	3년이상 4년대	미만	<u>16</u>	-				<u>14</u>			-	<u>16</u>
	4년이상 5년대	미만	<u>19</u>	-				<u>17</u>			_	<u>19</u>
	5년이상 6년대	미만	<u>22</u>	-				<u>20</u>			-	<u>21</u>
	6년이상		<u>23</u>	-				<u>21</u>		_		<u>22</u>
	<별표3> 경조시	<b>나</b> 별 휴가	·일수표	〈별	] 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개정안과 같음)						

## 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 25호, 2004. 6. 30)

총 무 위 원 회 2004. 7. 30

### 1. 심사 경과

가. 2004. 6. 30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7. 8 :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4. 7. 29 : 제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기획담당관 최학림)

### 가. 개정 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 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업유치지원금 융자대상사업자 중 전기 사업법 관련 조항 적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삭제(안 제2조제5호)
- 2).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조건중 자구수정(안 제6조)
  - 1인당 → 1가구당
- 3). 법령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 전기사업법 제17조 → 전기사업법 제16조

###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4항(주민복지지원사업)이 2001. 2. 24 개정 되므로서 이와 관련된 조항인 제2조와 제6조를 개정하고 제4조제2호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 중 전기사업법관련조항의 적용을 바로잡기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 5.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6. 소구 의견 : 없음